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10. 31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10.20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.10.21.
- 다. 상정일자 : 제19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4.10.31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기 락 환경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2011. 4. 5.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」로 개정되면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,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됨에 따라 “친환경상품”을 “녹색제품”으로 변경

- 2) 상위법령에 맞게 “녹색제품”의 정의를 수정(안 제2조)
- 3)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정비(안 제9조)
  - 순환골재 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추가
  -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변경
  -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변경
- 4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### 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면서 친환경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조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법인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안 제9조제4호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표하는 직위를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규정하였으나, 정부조직법 제37조 (법률 제11690호, 2013.3.23) 개정됨에 따라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, 그 명칭을 “산업통상자원부”로 법률 개정함에 따라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